

사고의 통보 방법 등 (제63조제2항 관련)

1.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과 통보 기한은 다음과 같다.

사고의 종류	통보 방법	통보 기한	
		속보	상보
가. 사람이 사망한 사고	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(이하 “속보”라 한다)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(이하 “상보”라 한다)	즉 시	사고발생 후 20일 이내
나.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	속 보 및 상 보	즉 시	사고발생 후 10일 이내
다.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 사고(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)	속 보	즉 시	
라.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도시가스 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(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)	속 보	즉 시	
마.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,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(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)	속 보	즉 시	
비 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			

2. 제1호에 따른 사고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 및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.

가. 통보자의 소속·직위·성명 및 연락처

나. 사고발생 일시

다. 사고발생 장소

라. 사고내용

마. 시설현황

바. 피해현황(인명 및 재산)